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11.>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교 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6) 주차장·건설기계 주기장·운수시설 · 의료시설·운동 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 설 등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7) 공장·숙박시설·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부터 7)까지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6)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다. 적용기준

-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 3)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팔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5) 가목4)의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란에서 "통로 등의 폭"이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을 말한다.
- 6)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또는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	----------	---------	---------

	가구수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4)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	30	10	60	20
	구 이하	(20)	(10)	(40)	(20)
	101가구 이상	45	15	90	30
		(30)	(10)	(65)	(20)
9)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 는 창고 등) 및 태 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나. 측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위: 미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가목1) 및 2)	-	10	3.5	15	5
2) 가목3)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 가목4)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4) 가목5) 및 6)	3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31대 이상	10	3.5	15	5
5) 가목7)	5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51대 이상	10	3.5	15	5
6) 가목8)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100가구 이하	(곡선 반지름: 7m)			
	101가구 이상	10	3.5	15	5

7) 가목9)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	---	-----------------------------

다. 적용기준

- 1) 가목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며, 팔호 안의 숫자는 왕복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3) 가목5)부터 7)까지 및 나목4)·5)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